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7
----------	-----

제출년월일 : 2010.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2007. 11. 1일 재의결 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무효 판결되어(2007추141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여
-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사업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을 조정함(안 제3조)

□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기업민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업무담당이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 및 관련 사업 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p><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p><input type="checkbox"/>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p> <p>(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 '09.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절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붙임 참조”</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5의2.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 '09.3.2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제2절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